

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257,800,000 | 7,734,000 |
| 일반회계 | 236,600,000 | 7,098,000 |
| 특별회계 | 21,200,000 | 636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21,200,000 | 636,000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6,892,705 | 206,781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4,918,000 | 147,540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| 578,000 | 17,340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| 1,100,000 | 33,000 |
|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| 1,416,000 | 42,48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1,653,049 | 49,591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15,000 | 450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4,517,237 | 135,517 |
|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110,009 | 3,30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68,16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